

# 천주교수원교구 제2대리구

## CATHOLIC DIOCESE OF SUWON SECOND VICARIATE

우 16048 의왕시 원골로 56(오전동) / 전화 (031) 360-7640~3 / 전송 360-7840

문서번호 천수교2대 2025-34

시행일자 2025. 8. 14.

수신 제위신부

참조 전교수녀, 총회장, 청소년위원장,  
청소년분과장, 초등부·중·고등부·장애아부  
주일학교 교감, 사무장

선 결			지 시		
접 수	일자 시간	.	결 재		
	번호	:			
처 리 과			공 람		
담 당 자					

제목 2025년 제2대리구 근속교리교사 표창 대상자 추천 안내

### † 경청과 식별로 동행하는 수원교구!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!

-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.
- 제2대리구 청소년1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장기간 봉사해 온 근속교리교사를 표창하고자 합니다. 이에 각 본당에서 봉사 중인 '근속교리교사 표창 대상자'의 추천을 받고자 하오니, 본당 신부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, 신청 기간 내에 '근속교리교사 표창 추천서'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다 음

가. 추천대상 : (1) [나. 표창의 종류]에 해당하는 근속교리교사 표창 대상자로 [다. 표창의 조건]을 모두 만족하는 각 본당 재직 초, 중·고등부, 장애아 주일학교 교리교사

(2) 대리구, 교구 차원의 청소년(초, 중고, 장애아부) 관련 재직 봉사자

#### 나. 표창의 종류

- 3년 근속(3년 이상 ~ 5년 미만) 표창
- 5년 근속(5년 이상 ~ 10년 미만) 표창
- 10년 근속(10년 이상 ~ 15년 미만) 표창
- 15년 근속(15년 이상 ~ 20년 미만) 표창
- 20년 근속(20년 이상 ~ 25년 미만) 표창
- 25년 근속(25년 이상) 표창

**다. 표창의 조건**

- (1) 주일학교 교리교사 관리시스템(C.T.M.S)에 입력된 근속기준일이 근속교리교사 표창 대상자 추천서 마감일인 **9월 30일(화)**을 기준으로 각 본당에서 교리교사로(만 3년, 5년, 10년, 15년, 20년, 25년) 재직 중인 자  
(단, 연차 계산은 C.T.M.S에 등록된 근속기준일로부터 만으로 계산하며, 아래 (3)의 휴직사유가 아닌 한, 휴직기간이 없어야 한다.)  
※ C.T.M.S : 주일학교 관리시스템으로 『<http://ctms.casuwon.or.kr>』에 접속하여 본당 주일학교 교리교사 현황과 근속기준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- (2) 근속교리교사 표창 대상자 추천서 마감일을 기준으로 **3년 근속 이상은 교리교사 교육과정 기본교육(구 입문과정)을 수료한 자**
- (3)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할 경우에는 연속 재직으로 인정은 되나,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  - (가) 군복무 기간
  - (나) 임신·출산
  - (다) 병·질환
  - (라) 유학 및 해외 연수
  - (마)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전·출입
  - (매) (가)~(마)의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한 휴직 사유서(붙임 2)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2대리구 청소년1국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인정된다.
- (4) C.T.M.S(주일학교 교리교사 관리시스템)에 등록되어 있는 자  
※ 미등록 교리교사는 근속교리교사 표창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며, 과거 근속교리교사 표창 이력이 있는 교리교사라 할지라도 등록되지 않아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신입교리교사로 등록되어 근속기준일이 초기화 된다.

**라. 추천을 위한 구비서류**

- (1) 근속교리교사 표창 대상자 추천서(붙임 1) ※ 공통 구비 서류
  - 소속 본당 주임신부의 추천서
  - ※ **근속 인정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직사유서(붙임 2)와 증빙서류를 제출 (이전 근속표창 수상 시 동일한 사유로 휴직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)**
- (2) 20년 근속 표창 대상자
  - 교적 사본 1부(본당)
  - 부상(해외 성지순례 경비 보조) 입금을 위한 통장 사본(근속표창 대상자 명의 계좌)
- (3) 25년 근속 표창 대상자
  - 교적 사본 1부(본당)

마. 필독사항

- (1) 최종 표창 대상자는 심의를 거친 후에 **10월 2일(목) 오후 5시에** 수원교구 제2대리구 홈페이지(<https://v2.casuwon.or.kr>) 공지사항에 최종대상자 명단을 공지. 명단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2대리구 청소년1국(☎ 031-360-7637, [v2-youth2@casuwon.or.kr](mailto:v2-youth2@casuwon.or.kr))으로 문의
- (2) 최종 표창 대상자 명단에 대한 문의는 표창패 제작을 위해 **10월 10일(금) 오후 5시까지** 가능(이후 문의 불가)
- (3) 표창의 부상
  - 부상 : 3년, 5년, 10년, 15년 근속 표창일 경우는 **지구**에서,  
20년, 25년 근속표창일 경우는 **대리구**에서 부담하며 부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
    - 3년 근속 표창 : 3년 근속 표창패(대리구), 부상 오만원 상당의 상품권(지구)
    - 5년 근속 표창 : 5년 근속 표창패(대리구), 부상 일금 십만원(지구)
    - 10년 근속 표창 : 10년 근속 표창패(대리구), 부상 일금 이십만원(지구)
    - 15년 근속 표창 : 15년 근속 표창패(대리구), 부상 일금 삼십만원(지구)
    - 20년 근속 표창 : 20년 근속 표창패(대리구), 부상 해외 성지순례 경비(대리구)
    - 25년 근속 표창 : 근속 교구장 축복장, 부상 교구장 친필 서명이 있는 성경(대리구)
- (4) 추천서와 구비서류는 **팩스 접수(FAX : 031-360-7840)**. 팩스 발송 후 **반드시 수신 확인 하셔야 합니다.(마감일 이후에 신청서 누락으로 인한 추가 접수 불가)**
- (5) **추천서 접수 마감일 : 9월 30일(화)까지(기한 엄수)**
- (6) 모든 근속교리교사 표창자에 한해서는 감사의 의미로 피정을 실시합니다.  
피정 참가비는 없습니다.
  - (가) 피정 일시 : 11월 15일(토) ~ 11월 16일(주일)
  - (나) 피정 장소 : 수원교구 영성교육원(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266)
- (7) 근속교리교사 표창패는 11월 23일(주일) '수원교구 교리교사의 날'에 맞춰 1~2주 전에 각 지구장 본당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.

바. 문 의 : 제2대리구 청소년1국 ☎ 031-360-7637(내선 0951)

※ 평일 09:30 ~ 17:00 전화가능(점심시간 12:30 ~ 13:30 제외)

- 붙임 1. 근속교리교사 표창 대상자 추천서.  
2. 휴직 사유서. 끝.

+ 문 회 종  
제 2 대 리 구 장 문 회 종 주 교

- 접수기한 : 9월 30일(화)까지
- 접수방법 : 팩스(☎031-360-7840)  
 ※ 확인 서명이 들어간 이미지(JPG, PDF) 파일은 이메일(v2-youth2@casuwon.or.kr) 접수 가능
- 문 의 : 제2대리구 청소년1국 (☎031-360-7637)

### 근속교리교사 표창 대상자 추천서

지구		본당		소속	초등	중·고등	장애아	
이름		표창대상(선택)	3년	5년	10년	15년	20년	25년
세레명		연락처(휴대폰)						
근속 교리교사 경력 기간 기입								
교구명	본당명	교리교사 활동기간						
		년 월 일 ~	년 월 일					
		년 월 일 ~	년 월 일					
		년 월 일 ~	년 월 일					
휴직 기간 기입								
휴직사유	휴직기간							
	년 월 일 ~ 년 월 일(개월)							
	년 월 일 ~ 년 월 일(개월)							
	년 월 일 ~ 년 월 일(개월)							
이전 근속 표창 수상 시 동일한 사유로 '휴직 사유서'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적어주세요(     년 근속)								
※ 근속으로 인정되는 휴직이 있는 경우, 붙임 2(휴직 사유서)와 증빙 서류를 필히 제출 (이전 근속 표창 수상 시 동일한 사유로 휴직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) ※ 근속 인정 휴직 사유 (군 복무 기간 / 임신·출산 / 병·질환 / 유학 및 해외 연수 /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전·출입)								
과정	기본교육(구 입문과정)			※ 2020년부터 입문과정이 기본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, 근속 대상자 선별 기준이 기본교육 이수로 변경됨				
수료연도	년							
근속피정 참가 여부		2025년 11월 15일 ~ 16일			참석 <input type="checkbox"/> 불참 <input type="checkbox"/>			

교 감	이름	세레명	연락처(휴대전화)

위와 같이 근속 교리교사로 추천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주 임(지 도) 신부

(인)

- 접수기한 : 9월 30일(화)까지
- 접수방법 : 팩스(☎031-360-7840)  
 ※ 확인 서명이 들어간 이미지(JPG, PDF) 파일은 이메일(v2-youth2@casuwon.or.kr) 접수 가능
- 문 의 : 제2대리구 청소년1국 (☎031-360-7637)

## 휴 직 사 유 서

※ 근속으로 인정하는 휴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이전 근속표창 수상 시 동일한 사유로 휴직사유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(단, 제2대리구 청소년1국에서 증빙서류 미첨 등의 사유로 제출 요청 시에는 필히 제출)

본 당		단 체	초 / 중·고 / 장애아
성 명		세 례 명	
연 락 처		휴직사유	
기 간	20 . . . ~ 20 . . .	( ) 개월	
근 속 인 정 휴 직 사 유	군복무(복무기간 전체) / 임신·출산 / 병·질환 / 유학 및 해외연수 / 전·출입 ※ 위의 사유가 아니면 근속에 해당되는 근속 인정 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음.		
유의 사항	1.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근속 인정 휴직으로 인정됩니다.  (근속 인정 휴직 증빙 제출서류) ● 군복무 : 전역증 사본, 병적증명서 등 군복무 기간이 기재된 증빙 서류 ● 임신·출산 :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의 출생일을 알 수 있는 서류 ● 병·질환 : 일반진단서, 병원진료기록 사본 등 병·질환 사실 증빙 서류 ● 유학 및 해외연수 : 수료증, 이수증 또는 학력 관련 증빙 서류 ● 전·출입 : 주민등록 등·초본 또는 교적사본 등 전출입 사항 증빙 서류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 등 개인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  2. 위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 연속 재직으로 근속은 인정하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음.		
본 당  확 인	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 합니다.  20 . . .  교 감 : _____(인)  주임(지도)신부 : _____(인)		